현장에서 유념해야 할 세무 상식 - 지출 증빙 서류 수취 의무

- 5만원 초과 지출시 적격 증빙 구비해야,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실명제 -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일을 완성시키는 주문 생산 시스템, 옥외적이고분산적인현장중심의업무시스템, 공사의대규모성, 높은하도급의존도, 그리고고위험….

건설산업의 특징들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세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특히건설현장이도처에산재해있어인적 ·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할 뿐아니라지방영세상인들을상대로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세법」이 요구하는 제반 증빙을제대로갖추기가쉽지않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지출 증빙 서류의 수취 문제를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와접대비의경우로나누어살펴본다.

5만원 초과 지출엔 적격 증빙 구비해야

먼저 작년 말의 「세법」 개정으로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5만원으로낮아진적격지출 증빙 수취 보관 의무를 살펴본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사업자로부터건당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지급하는경우에는세금계산서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또는현금영수증중어느하나를 수취하여보관하도록하였다. 이러한증빙을수수하면그거래당사자와 거래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국세전산망에 입력된다. 거래 당사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회사, 현금 영수증 사업자의 국세청 통보를 통하여 거래가 투명해지는 것이다. 매출 누락을방지하고 공정한 과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이란금년부터본격적으로도입된 제도로서, 건당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승인받는것과같이승인을받아발급해주는 영수증이다. 승인을해주는회사를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하는데, 신용카드회사나 VAN사가이에해당한다. 금전등록기영수증은자동으로세무서에통보되는기능이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이아니다.

건설 현장이 있는 지방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많지 않다. 또 직원들을 통제하려면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알아야 한다. 건설회사가 이 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있다. 어떻든 재화나용역의대가로 5만원을초과하여지급한때에는적격증빙을갖춰야한다. 만약갖추지못하면접대비의경우에는 손금 부인된다. 접대비가아니라면 손금 부인되지는 않지만 거래 금액의 2%를가산세로내야한다.

접대비에 대하여는 이 글의 후반에서 다시살펴보기로하고, 먼저 일반적인지출의 경우에대하여좀더세부적으로짚어보자.

기준 금액은 거래 건당 5만원 초과이므로 5만원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가 식사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할 경우, 1인당으로는 5만원 이하지만 모두 합하면 5만원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때에도적격증빙을수취해야 한다. 직원 1인당1매씩간이세금계산서를받으면괜찮다. 그러나한꺼번에영수증을 받으면 위 규정에 걸린다. 경리 직원은 업무량만 늘어나고 실익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사후에 지출 증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30만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직원6명이식사한것이라고주장한다고받아들여지겠는가. 함바집에서 식사하는 경우도마찬가지이다. 통상월별또는주기별로 인부들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데, 이때 영수증을 한 장으로 받으면 위 규정에 저촉된다. 원칙적으로는1인분식사각각에 대하여간이세금계산서나영수증을받아야 한다. 그러나 편법으로 5만원씩 끊어서 결제해도위규정에저촉되지는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나중의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하여 그 내역을 자세히 정리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읍 면 지역에소재하는간이과세자로서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예컨대, 읍면지역에있는함바식당으로부터는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읍면지역이라하여도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 식당 주인이 현금을 받을 욕심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은 보자기로 덮어놓아신용카드가맹점인지모르고현금으로 결제했다는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시지역에서는함바식당이라하여도예외가없다. 함바식당이아예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에해당되고, 따라서적격 증빙을받지못하면가산세가적용된다. 이경

*경영포커스 1904.1.2 1:59 AM 페이지55

건설 현장은 도처에 산재해 있어 인적 ·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의 경우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세법」이 요구하는 제반증빙을갖추기가쉽지않다.

우에는 함바식당 주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놓도록 권장하는것이좋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는 국세청에서 올해 말까지 60만대를무료로보급한다고한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가? 없다. 간이과세자는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못하기때문이다. 간이과세자가발행한세금계산서는 다만영수증으로서의기능밖에없다.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는 예외

위의 적격 증빙 수취 의무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도급또는하도급업체가공사의지체로지체상금을 지불한경우그지체상금은재화나 용역의 대가가아니므로 위규정의적용대상이 아니다. 건물 파손비도 또한 같다. 일용 근로자 급여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 운전 보조 수당 등도 적격 증빙 수취 의무에서 제외된다. 폐업한 건설업자로부터 잔존재화를사는경우에도폐업자는 더 이상사업자가아니고 잔존재화의처분도사업상하는것이아니므로역시적격증빙수취의무의대상이아니다. 관련영수증만착실하게구비하고있으면문제가없다.

한편, 거래대금을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경우에도 예외가있다. 인터넷이나 PC 통신 또는 TV 홈쇼핑을 통하여재화또는 용역을공급받는경우에는적격 지출 증빙을 수취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송금 영수증만으로도인정된다. 우편송달에의한주문판매를통하여재화를공급받는경우도같다. 이러한경우에는경비등의 송금 명세서를 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할것이다.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 부인

접대비도 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위에 열거한 적격 증빙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구체적 운용에 있어서는위의 적격 증빙 수취 의무와 사뭇 다르다. 그 차이를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건당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에 대하여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금액전부를손금부인하고가산세는부과하지않는다. 그러나 접대비가아닌일반 지출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가산세를부과한다는점에서차이가난다.

둘째, 카드로 결제할 경우 5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반드시법인카드를 써야 한다. 임직원의 개인카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5만원이하의접대비에대하여는임직원명의의 개인카드를 써도 무방하다. 법인카드의사용은5만원초과의접대비에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대비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가 아니어도상관이없다. 회식비와같은복리후생비, 소모품이나비품구입비, 기타일반적인 지출의 경우에는 금액의 다소에 불구하고 임직원개인카드를사용할수있고, 그금액을회사가보전해주어도문제가없다.

셋째, 접대비지출에는읍면지역의예외가 없다. 하긴, 읍면 지역에서 신용카드도 가맹하지 않은 업체에서 접대를 하는 사례는많지않을것이다.

넷째, 접대는 사업자로부터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일반 개인에게직접접대한경우에도「세법」의 규제를받는다. 예컨대, 거래처임직원의경조사비지급도접대이고, 따라서5만원을초과한다면적격증빙을구비해야한다. 세제당국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까지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자기 회사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 후생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접대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위의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임직원은 사업자도 아니고, 경조비가 재화나 용역의대가도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회사임직원에 대한 경조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라면 적격증빙을구비하지않아도세무상불이익이없다. 만약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그성격에따라당해종업원에게근로소득을지급한것으로처리하면될것이다. 한편, 회사임직원이나거래처가아닌예컨대, 관련 공무원의 경조사에 낸 돈은 접대비에 속하지않고, 복리후생비는더욱아니다. 이는기부금인데, 전액손금부인되는것이다.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실명제

금년부터 국세청은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업무 관련성을입증하도록하였다. 물론모든 접대비는업무관련성이있어야한다. 만약업무관련성이없다면기부금이지접대비가아니며, 따라서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만약 접대 목적이나접대경위 등을밝히지못한다면기부금으로도인정되지못하고지출한 사람에게 상여로 처분된다. 지출한 사람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처분한다. 소위인정상여가되는것이다. 세무조사시인정상여로처분되면당초에접대비로기재한금액또는그이상의금액이각종세금으로추징될수있다.

접대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접대 상대방까지 세세하게밝히지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까지 세부적으로 밝혀 업무관련성을입증해야한다. 여기서50만원 이상이므로 5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임에 유의한다. 위에서 5만원까지는 적격 증빙 수취 의무에서 제외되는것과혼동이없어야할것이다.

50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유흥주점의 경우봉사료도 포함된다. 따라서 만약 접대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공급 가액만으로는 50만원미만이라하여도업무관련성의입증대상임에유의할것이다.

업무 관련성의 입증은 적격 증빙의 뒷면이나 여백 등 적절한 곳에 접대 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및성명등을기재하면된다. 여기서접대상대방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업무관련성입증대상이거래건당 50만원 이상이므로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 일부를 외상 처리하고 나중에 결제하거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나머지는세금계산서를받거나여러개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국세청도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만들어놓고있다. 즉, 동일한날짜에동일한 장소에서동일한거래처에대하여지출되었거나,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되었다 하여도 실질적으로1건의거래로인정되는경우등은 그 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한다고 고시하고있다. 향후에는세무조사시에접대비분할문제로세무공무원과다툴일이생길것으로보인다.

상품권은 적격 증빙 면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 목적이라 하여도 적격 증빙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상품권은구입자체만으로재화나용역을구매한 것도, 접대를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당 50만원 이상을 구입한경우에는업무관련성을입증해야한다. 적격증빙구비의무와업무관련성입증은 별개의 사항이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입증 여부를 따진다. 그 상품권을 제공받은 거래처별로 따지지않는것이다. 그러나상품권이아닌 현물 접대의 경우에는 상품권과 달리 당해 물품을 제공받은 거래처별로 50만원 이상인경우에만지출증빙의기록보관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100만원상당의특산물을 구입해서거래처에나누어준경우, 구입당시에는 5만원 초과이므로 적격 증빙을 받으면 되고, 이를 나누어줄 때 50만원 상당 이상을 나누어준 거래처에 대해서만 그 세부 내역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50만원 미만이라 하여도 어떤 거래처에 지급했는지는기록하고있어야한다. 만약이런 기록이 없다면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될 수있다. 동일한접대상대방이라하더라도 예컨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접대한 경우에는 사실상 별개의 지출로 본다. 5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실무에서유념해야할 것이다.

김영준
회계사